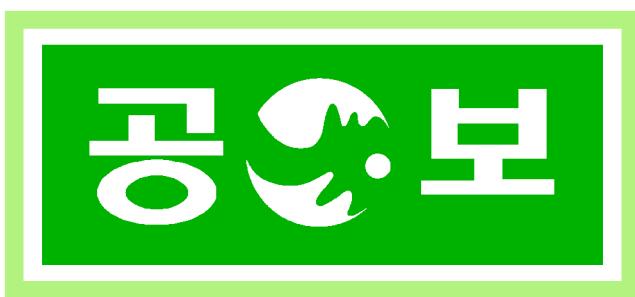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람	기 관 의 장



제 1013 호 2016. 6. 23. (목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02호[도로명주소 고시] 2
○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03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4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-580호[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 6
○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-581호[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 13
○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-582호[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] 18

안

-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계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
■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행정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

회
람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5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02호

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6월 23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16-16(신천동)외 5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6. 6. 23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증정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신전동 191	울산광역시 북구 신전로 16-16(신전동)	2016-06-23 7번 지번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4-08	
2	울산광역시 북구 신전동 191-2	울산광역시 북구 신전로 16-18(신전동)	2016-06-23 기존 지번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4-08	
3	울산광역시 북구 청평동 833-1	울산광역시 북구 신암로 128-12(청평동)	2016-06-23 울산의 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6-18	
4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72-8	울산광역시 북구 오계로 254(오계동)	2016-06-23 소개동에 소재하는 도로로 법정동인 오계동의 이름을 반영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1-03-22	
5	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단지구 81B 4L	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단지구 37(산하동)	2016-06-23 강동산단지구를 지나는 도로라는 의미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4-05-07	
6	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961-1, 연암동 13-34	울산광역시 북구 모들하늘별로 126(효문동)	2016-06-23 모들하늘산단지구에 조성된 도로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0-04-27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03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6월 23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찬샘1길 29-6(신천동)외 1건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(별지참조)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6. 06. 23.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친생1길 29-6	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91,신천동 197	2016-06-23	건축물 멀실	
2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54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72-8	2016-06-23	건축물 멀실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6 - 580 호

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6월 23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개정(15.12.22)으로 스스로 처리해야 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중에서 일부 휴게음식점 업종 제외 규정 신설
-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인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 조문 정비

2. 주요내용

-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중에서 발생량이 적은 일부 휴게음식점 업종 제외 규정 신설(안 제2조)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1조, 14조, 20조)
- 납부필증을 필름형에서 밴드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보관함 조문 삭제(안 제13조)
- 상위 법령에 따르는 과태료 부과·징수 절차에 대한 조례 조문은 불필요하여 삭제(안 제21조)

3. 근거법규

- 폐기물관리법 제14조, 제68조
-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별입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3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(참조 : 환경미화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- 라. 제출처
 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
 - 전화번호 : 052-241-7813, 팩스번호 : 052-241-7809

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단서 중 “휴게음식점영업”을 “휴게음식점영업(음식물류를 조리·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, 제과류,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·판매하는 업종은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4항 중 “부과할 수 있다.”를 “부과한다.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납부필증과 납부필증 보관함”을 “납부필증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부과할 수 있다.”를 “부과한다.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부과할 수 있다.”를 “부과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- ② 삭제
- ③ 삭제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"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" (이하 "다량배출사업장"이라 한다) 이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. 다만,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3,000제곱미터 이상인 <u>휴게음식점영업</u>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.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휴게음식점영업 (음식물류를 조리·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, 제과류,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·판매하는 업종은 제외한다) ----- ----- -----.
4. ~ 8. (생 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치리 협조) ① ~ ③ (생 략) ④ 구 청 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 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	제11조(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치리 협조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부과한다.
제13조(납부필증 등 제작 및 종류) <u>납부 필증과 납부필증 보관함은</u> 구청장이 제작하며,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3조(납부필증 등 제작 및 종류) <u>납부 필증</u> ----- -----.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기용기의 설치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·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<u>부과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20조(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 ·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)</p> <p>① 구청장은 제11조,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른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<u>부과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④ (생 략)</p> <p><u>제2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)</u></p> <p>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</p> <p>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,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·영·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</p>	<p>제14조(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기용기의 설치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과한다.</u></p> <p>제20조(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 ·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과한다.</u></p> <p>② <u>삭제</u>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2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</u></p> <p><u>② 삭제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「지방세법」의 규정에 따른다.</p> <p>③ 피처분자가 의견제출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.</p>	③ 삭제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6 - 581 호

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6월 23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조례 조문 정비
-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따르는 업무에 대한 조례 조문은 불필요하여 삭제

2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 문구 수정(안 제1조, 2조, 3조)
- 상위 법령에 따르는 과태료 부과·징수 절차에 대한 조례 조문은 불필요하여 삭제(안 제8조, 9조)

3. 근거법규
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, 제31조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**5. 의견제출**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3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(참조 : 환경미화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- 라. 제출처
 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
 - 전화번호 : 052-241-7812, 팩스번호 : 052-241-7809

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북구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북구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가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조제2항”을 “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중 “(장려금등의 지급)”을 “(장려금 등의 지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31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조(목적)</u> 이 조례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, 같은법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, 같은법시행규칙("이하 "규칙"이라 한다),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<u>제1조(목적)</u> 이 조례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u>제2조(구청장의 책무)</u> 울산광역시북구 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	<u>제2조(구청장의 책무)</u> ----- ----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2항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제3조(장려금등의 지급)</u> 구청장은 별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구민,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, 보상금등을 지급 할 수 있다.	<u>제3조(장려금 등의 지급)</u> ----- 별 제31조제1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.
<u>제8조(자원재활용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)</u>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, 법 제15조의2제2항,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	
<u>제9조(과태료 부과·징수절차)</u> 구청장은 <삭제> 별 제42조가 정하는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·징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.	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
조례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연락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6 - 582 호

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「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6월 23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“재활용교환판매장”을 2011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으나, 현재 시설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_ 폐지」(2001. 4. 6.제정)

3. 근거법규
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

4. 폐지조례안 : 따로 붙임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3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(참조 : 환경미화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- 라. 제출처
 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
 - 전화번호 : 052-241-7812, 팩스번호 : 052-241-7809

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폐지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세
호

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